

소득·재산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¹⁾					
소득사항	보훈급여금 등 (간호·조정수당 제외)		담당 공무원 기재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이자소득	자산 조회결과 적용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근로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 원	()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자산 조회결과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	원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자산 조회결과 적용		토지	자산 조회결과 적용
	선박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임목재산	자산 조회결과 적용
	항공기	자산 조회결과 적용		어업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차량명(), 용도 [] 생업용 [] 보철용 [] 자가용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백만원), 상가보증금(백만원), 기타(백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동산	소(마리, 원), 돼지(마리, 원)	분양권		원
기타가축(마리, 원), 종묘(원)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기구류(원), 기타(원)		회원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제84조의2제2항·제89조제3항·제8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50조의2제2항·제53조제2항·제5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8조의2제1항·제28조의3제1항·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고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